

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		이 요약서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,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그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되고,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혹은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판매업 상호(명칭)	프로메가코리아 유한회사	
판매업 주소	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에이동 1013호	
판매업 대표전화	1588-3718	
유해화학물질등 정보	물질명	노닐페놀류 α -(4-Nonylphenyl)- ω -hydroxy poly(oxy-1,2-ethanediyl), branched
	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식별번호 (CAS No.)	127087-87-0
	용도	Laboratory chemicals (시험용 · 연구용 · 검사용 시약)
취급 기준 준수	취급시설	- 취급 시설 내에 흡 후드 장치 설치되어야 할 것 -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설치할 것
	화학사고 예방	- 물에 녹는 수용성 - 보호복, 고글형 보안경, 고무장갑, 고무앞치마, 고무장화와 전면보호구 등을 착용 후 취급할 것 -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즉시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낼 것 - 눈에 들어간 경우 다량의 물로 씻어낼 것. 처음에 씻어낸 이후 콘택트렌즈가 있다면 제거하고 최소 15 분간 계속 더 씻어낼 것
	보관 · 저장	-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나 실린더에 저장할 것 - 강산화제와 격리하여 보관할 것 -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 할 것 -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할 것
	운반	- 운송 시 유해화학물질 라벨 부착 할 것 - 운송 시 가연성 물질과 같이 포장하지 말 것 - 운반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용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고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
	기타	-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-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물질안전원,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-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